

[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]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8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전략적 육성과 관련하여 조성하는 당해 펀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출자목적
 -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관련 분야 창업기업의 모험자금 확충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전략적 성장 지원
- 출자근거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
○ 출자방식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

○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 (친환경·에너지 분야)
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
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, (주)에코프로,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, 비나텍, 대구은행, 전북은행, 한국자산신탁,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
- 특별조합원 : 한국모태펀드
-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(8년, 4년 투자 4년 회수)
- 펀드규모 : 300억원
 - 모태펀드 150, 충청북도 20, (주)에코프로 67,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5, 비나텍(주) 10, 대구은행 10, 전북은행 15, 한국자산신탁 10,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 3

<충청북도 연도별 출자금액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
총 계	20	5	6	6	3
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	20	5	6	6	3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- 투자대상 : 친환경·에너지 분야의 창업기업
- 도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

○ 기대효과

- 친환경 정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세계적 기조와 정부 및 우리도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맞춘 전용펀드 운영으로,
- 향후 IPO 및 기술판매(라이센싱)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,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충북창업펀드 1,000억 조성은 민선8기 충청북도 핵심공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·육성할 계획임

- 정부 정책자금(모태펀드)를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, 문화관광, 바이오 헬스케어, 미래차·이차전지, 차세대 반도체 등도 전략산업 육성개발 및 외부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투자 펀드 조성의 일환임

나. 추진경과

- 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: '24. 5. 7.
- 펀드 사업 공고(수정) : '24. 5. 16. ~ 5. 30.
- 1차 서류 평가 : '24. 6. 11.
- 2차 발표 평가 : '24. 7. 18.
※ 평가위원회 구성(내·외부 전문가 6명)
- 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: '24. 7. 23.

다. 종합의견

- ‘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’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을 위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- ‘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’은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결성된 전용 펀드로, 총 펀드규모는 300억원이며, 이 중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(6.7%)을 출자하고자 함.
 - 모태펀드(국비) 150억(50%), 충북도(중소기업육성기금) 20억(6.7%), (주)에코프로 등 기타 130억(43.3%)

- 충청북도에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을 선정하였으며, 친환경·에너지 분야 등의 도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음.
- 또한, 본 출자계획 동의안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 및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법적 근거를 충족함
-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지구 생태계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친환경·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는 세계적 추세임
- 이에 따라 친환경·에너지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출자계획 동의안은 향후 도내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유니콘 기업¹⁾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동 계획을 승인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1) 기업가치 1조원 이상, 창업 업력 10년 이내의 비상장 스타트업